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2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 가.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 등 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신고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침해신고하여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21. 1. 28.)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피심인은 ○○유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21. 1. 28.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홈페이지 운영		~ '21 1. 28

나.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신고인의 자녀가 '20.7.1. 다른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전학 하였으나, 피심인은 신고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 4개월이 지난 '20.10.28. 파기한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통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치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3.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4. 1.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2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신고인의 자녀가 '20.7.1.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전학하였으나 신고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 4개월이 지난 '20.10.28. 파기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제공받는자 등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 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_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법 제75조제2항제4호	600	-	300	300

V.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4월 12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